

부 록

- ▶ 총동문회 회칙
- ▶ 총학생회 회칙
- ▶ 캠퍼스 소개
 - 캠퍼스 배치도
 - 지리적 배경
 - 캠퍼스 개관
 - 교사와 복지시설 소개

총동문회 회칙

1963년 11월 1일 제정	1971년 4월 5일 개정
1975년 4월 5일 개정	1977년 4월 5일 개정
1978년 5월 5일 개정	1980년 4월 26일 개정
1983년 8월 20일 개정	1986년 4월 19일 개정
1989년 4월 22일 개정	1994년 6월 11일 개정
1996년 5월 25일 개정	1996년 11월 2일 개정
1998년 6월 9일 개정	1999년 5월 28일 개정
2005년 9월 15일 개정	2006년 2월 16일 개정
2008년 3월 14일 개정	2010년 12월 1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남대학교 총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사회활동의 협력지원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위치) 본회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각 지역과 직장, 해외에 지부 동문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과 그 조성사업
 3.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4. 회원 명부, 회보 등 간행물의 발행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6 조(자격) ①정회원은 모교(대전대학, 송전대학교 대전캠퍼스 포함)를 졸업한 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로 한다.
 - ②명예회원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 대학장 수여자

및 모교에서 20년간 근속한 교직원 중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기독교관에서 2학기 이상 재적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준회원은 본교에 입학한 자로 한다.

- 제 7 조(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칙 준수 및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 ②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칙 준수 및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 ③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1. 회비(입회시의 입회비, 종전회원은 연회비,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임원분담금의 경우 납부의 통지를 받은 후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칙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상임이사회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40명 이내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3. 사무총장 : 1명
 4. 사무국장 : 1명
 5. 상임이사 : 운영이사 20명, 기획이사 20명, 법무이사 20명, 조직이사 20명, 회보신문이사 20명, 대외협력이사 20명, 홍보이사 20명, 여성이사 10명, 친교이사 20명, 장학이사(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 임원)
 6. 당연직 이사
 7. 감사 : 2명
- ②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③임원은 임원분담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간 만료 후 자

동 해임된다.

제 9 조(고문) 본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전임 역대 총동문회장
2. 전, 현 역대 학교법인 파송이사
3.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

제 10 조(명예회장) 모교의 총장은 본회의 명예회장이 된다.

제 11 조(임기) 회장 및 기타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 각 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다음의 각 담당업무를 분장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학담당부회장: 수석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각종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한남장학재단 이사장 또는 한남장학재단에서 지정하는 장학재단이사가 겸임한다.
2. 운영담당부회장: 총동문회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3. 기획담당부회장: 각종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4. 법무담당부회장 : 각종 법무처리 및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5. 회보신문담당부회장: 각종 출판 및 회보발간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담당부회장: 각종 대외섭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홍보담당부회장: 각종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8. 여성담당부회장: 여성회원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친교담당부회장: 각종체육 및 친교활동에 관한 사항

③상임이사는 전항의 각 부회장 담당업무를 분장한다.

④사무총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처리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감사는 회계 사무 일체 및 본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회의) ①총회이외의 모든 회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단,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 및 이사회 회의소집은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4 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 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을 보고 받는다.
2. 임원, 모교 재단파송이사 및 대학평의원 선임에 대해 보고받는다.
3. 예산 및 결산의 보고
4. 사업계획의 보고
5. 지부 동문회 결성의 보고

제 16 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눈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각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소집의 필요성을 가질 때
2.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7 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이사
 - 1) 각 학과 동문회장
 - 2) 각 지역, 직능, 직장 동문회장
 - 3) 각 대학원 동문회장

- 2.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및 감사
- ②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및 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이사회의 기능)

-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모교학교법인 파송이사 및 대학평의원선임(단, 총동문회장과 파송이사 및 대학 평의원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
 4.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지부 동문회의 설립보고

제 19 조(법인파송이사) ①법인 파송이사는 모교의 재단 이사회에 본회를 대표한다.

- ②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교 재단 이사회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③ 파송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0 조(상임이사회의 기능) ①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각종 회의록 채택
- ④ 삭제
- ⑤ 기타 동문회 중요사항

제 21 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학과, 대학원 및 지부 동문회

제 22 조(설치) ①학과 동문회는 모교의 학과단위로 구성한다.

- ②대학원 동문회는 모교의 각 대학원 단위로 구성한다.
- ③지역 동문회는 지역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5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직능 동문회는 직능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⑤직장 동문회는 직장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모교재직 동문회는 교수동문회

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⑥해의 동문회는 국가단위로 구성하며,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23 조(등록) 각 학과, 각 대학원, 지역, 직능, 직장, 해외 동문회(이하 “각 학과 동문회”라 한다.)는 회칙, 임원 및 회원명단, 최근3년 이내의 임원선임 내용이 수록된 회의록을 총 동문회에 보고해야 하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하여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 학과 동문회로 등록하지 아니한 동문회, 제24조에 따른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동문회는 제17조 제1항의 당연직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제 6 장 재 정

제 24 조(재정) ①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입회비는 20,000원, 연회비는 30,000원, 임원 중 회장의 분담금은 무제한, 부회장의 분담금은 임기 당 500,000원, 이사의 분담금은 임기 당 200,000원으로 한다. 단, 분담금 또는 찬조금을 부담한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②본회 입회비의 50%는 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25 조(감사) 감사는 년 1회로 하고 감사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까지 한다.

제 7 장 회 칙

제 27 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은 이사회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 개정 후 4월 이내에 제7조 제1항의 권리행사

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3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권리행사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본 회칙은 통과된 날(2010.12.1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총학생회 회칙

□ 총학생회 회칙

1987. 9. 1 제정 1995. 5. 1 개정
2009. 10. 13 개정 2009. 11. 13 개정
2011. 10. 11 개정

전 문

한남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진리, 자유, 봉사의 건학이념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 탐구의 장으로써 정의로운 민주사회 구현을 그 근본으로 한다. 한남인은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주권을 함양함으로써 어떠한 학내외의 반지성적, 반민주적 힘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될 수 없으며, 대학은 현실사회의 진실을 대변하고 민중이 이끌어 가는 역사발전의 봉사적 역할을 담당하며, 비판적 실천적 지성을 가지고 상호 신뢰 속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대학자치와 학문사상의 자유로운 터전 위에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숭고한 업적을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를 한남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한남대학교의 건학정신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창조적 비판능력을 고양하며, 학문사상의 자유를 통한 올바른 대학문화를 건설하여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장소) 본회는 한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한남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본회 자체를 부인하거나 본회, 회원, 기타 정당한 활동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과 관련한 적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회원의 권리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6 조(구성) 본회는 학생총회, 총대의원회,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제 7 조(본회의 학교운영협의)

1.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당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에 협의할 수 있다.
 - ㉠ 학생의 권익과 밀접한 중대사항
 - ㉡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
 - ㉢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및 교과과정의 협의
 - ㉣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3.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 그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학교당국과 협의하여 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 8 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 활동에 있어 최고의 의사토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구성 및 권한)

1.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진반에 중대 사항을 보고 받고 토의 의결한다.

제 10 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고, 총학생회장 유고시 총부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11 조(소집)

1. 정기총회는 각 학생자치기구의 제반활동사항 보고 및 여론수렴을 위해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비상)회의는 총대의원회 재적 1/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의 재적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총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학생총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하며 개최 당시는 휴강을 원칙으로한다. 단, 휴일은 공고기간에서 제외되며 임시총회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의결)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1/5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은 그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총대의원회

제 13 조(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4 조(구성 및 자격)

1. 총대의원회는 본교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 대의원은 본교 전체 학과 재학생들이 직접선거로 선출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각 학과(전공)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15 조(의장)

1.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되며, 총대의원 회의 운영, 사무를 관장하고 총대의원회를 대표한다.
2. 총대의원회 의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해당자치기구에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총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탄핵 결의가 있거나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및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권이 있으며 불이행시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16 조(소집) 총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 이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에는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항 단서는 예외로 한다.

제 17 조 (집행부) 총대의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 또는 평학우 중에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시 상임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제 18 조(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재적 1/2이상의 발의 재적 2/3이상 찬성)
2. 학생총회 소집 요구(재적 1/2이상의 요구로 소집)
3. 학생회비 심의 및 승인권(과반수 이상 출석 2/3이상 찬성)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의 심의 승인권
5.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재적 1/3이상 찬성)
6.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발의 권(재적 1/2이상 발의, 재적 2/3이상 찬성)
7.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급 부장과 운영위원회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8. 총대의원회 의장 선출권(재적 2/3이상 출석 중 최다 득표자)
9. 총대의원회 의장 해임 의결권(재적 2/3이상 찬성)
10. 감사결과 부정 발견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당국의 징계요구권
11. 학생자치기구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예산 삭감권(10%이내, 재적 1/3이상 찬성)
12. 학내 여론조사 사업 실시권

13. 회칙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권
 14. 자체 감사권
 15.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 19 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상설 기구이다.
1. 총대의원회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는 각 대학별로 소속 대의원이 선출한 대표 1인의 상임대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겸임한다.
 3. 상임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0 조(상임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 상임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대의원회 총회가 개최 불가능할 때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임무 완료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3. 상임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대의원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집행부에 대한 임명동의 권을 갖는다.
 5. 상임위원회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재적 2/3 이상의 동의로 상임위원회가 총대의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7.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회비채정에 관한 사항
 - ㉣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21 조(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의 결)
1.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현저할 때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발의와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학생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 여

- 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에 대한 재신임투표의 결의가 있으면 결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3. 재신임투표는 본회 재학생 1/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재신임투표 결과 불신임되었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5.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의 후 보궐선거는 8장 6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총학생회

- 제 22 조(지위) 본회의 집행권은 총학생회가 가진다.
- 제 23 조(구성)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학생취업대책위원회,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 1 절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 제 24 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의장, 대학평의원회의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총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3. 총학생회장은 제1장 7조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여 본회의 권익을 위한 발언권을 가진다.
- 제 25 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은 불신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 26 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3. 집행부 각 부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4. 회칙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할

-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서 개정 확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5.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학교당국에 제출하여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6. 총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사업 및 중앙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7.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기구 및 임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8. 총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9.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 총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2 절 중앙운영위원회

- 제 27 조(지위) 본회의 운영권은 중앙운영위원회가 가진다.
- 제 28 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
- 제 29 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 제반사업을 계획, 심의, 조정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2. 본회의 예산, 결산서를 심의, 조정하여 총대의원회 상정한다.
 3. 중앙운영위원은 총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사 개진권을 갖는다.
 4. 총학생회비를 심의 책정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5. 학생 정기총회시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답변 요구권을 갖는다.
 7. 총학생회장의 학생총회 소집에 대한 협의권과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8.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9. 총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11. 기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업무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 30 조(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중앙운영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제 31 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2/3의 출석으로 개최 가능하며 재적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학생복지위원회

- 제 32 조(지위) 학우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우들의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학내의 학생복지에 대한 분석, 홍보, 개선을 도모하고 이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자치능력의 향상, 교육의 재투자 실현, 건전한 대학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3 조(구성)
1.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에 선출된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정책실을 둘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교과위, 소비조합소위, 학칙개정소위, 등록금소위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제 34 조(소비조합 소위원회)
1. 소비조합 소위원회(이하 “소위”라 한다)는 회원의 권익 및 제반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사항을 학교당국에 건의 조정할 수 있다.
 2. 복지활동에 관한 계약, 수입, 기타 재정은 학교 당국에 일임하고 소위는 이를 협의 및 감시, 부당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은 제반 업무를 공개논의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내에서 모든 결정사항을 의

결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총대위원에 제출한다.

제 35 조(탄핵)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총회에 발의하고 불신임 결의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재임명한다.

제 36 조(집행부) 위원장은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책실장 및 집행부를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 37 조(재정)

1.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에서 관리 한다.
2. 이 재정은 총대의원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제 4 절 학생 취업대책위원회

제 38 조(지위)

1. 본회의 취업 대책을 마련하고 학우들과 졸업생들의 올바른 사회 진출을 위하여 건설된 상설 기구이다.
2. 본교 취업 대책위원회에 학생대표로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제 39 조(구성 및 사업내용)

1. 학생 취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 3인이상이 추천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정책실을 둘 수 있다.
3. 앨범 사진 촬영 및 편집 업무 수행을 위해 4학년 대표 중 각 단과 대학에 위원 1인씩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4. 졸업 예정자 물품(졸업 앨범, 기념품, 졸업장 케이스, 가운데여) 등의 계약 및 납품을 학생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학생취업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취업관련의 제반사업에 동석하며, 모든 계약시 계약서에 참관인 자격으로 날인한 후 시행하고 이의 공개 및 감시, 당안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기타 취업관련의 제반 사항을 이행한다.

제 40 조(재정)

1. 4학년 졸업 예정자들로부터 별도 징수하며, 물품대금은 학생복지부에서 관리하고 경상비는 운영위에서 관리한다.
2. 경상비는 총대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 5 절 집행부

제 41 조(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 각 부서국장 및 부장으로 구성된다. 단, 필요한 경우 적당한 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 42 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는 총학생회 고유의 사업과 운영위원회,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
2. 총학생회장의 통괄 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3. 각 부서 부장은 총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시 출석,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 1절 단과대학 학생회

제 43 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이하“단대학생회”라 한다)는 단과대학 최고의 학생기구이다.

제 44 조(구성)

1. 단대학생회는 대학별 학생 전체로 구성된다.
2. 단대학생회는 단대학생회장, 단대부학생회장, 단대 운영위원회,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 45 조(회장)

1. 단대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를 대표하고 단대학생총회의 의장이 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2. 단대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단대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6 조(업무 및 권한)

1. 단대학생회는 당해 대학의 학생활동을 자치적으로 수행한다.
2. 운영계획서, 예산, 결산안 보고서를 단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3. 단대학생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학생회의 부서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단대회칙에 정한다.
- 제 47 조(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 최고의 운영기구로써 단대학생회장과 단대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2 절 학과 학생회

- 제 48 조(지위) 학과 학생회(이하 “과학생회”라 한다)는 학과 최고의 학생기구이다.
- 제 49 조(구성) 과학생회는 각 과의 전체 학생으로 구성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인 기구를 가진다.
- 제 50 조(회장) 과학생회장은 과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과학생회장은 과학생회를 대표하고 단대운영위원이 된다.
- 제 51 조(업무 및 제정)
- 1. 과학생회는 학과 고유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2. 과학생회의 보조비는 단대 인원수 배정액의 50% 이내로 한다.
- 제 52 조(회칙) 단대 및 과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반하지 않는 독자적인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 6 장 총동아리 연합회

- 제 53 조(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그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와 동아리인의 대표기구이다.
- 제 54 조(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된다.
- 제 55 조(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제 56 조(업무 및 권한)
- 1. 동아리 연합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독자적인 기구를 가질 수 있다.
 - 2. 동아리 연합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3.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정한다.
- 제 57 조(회칙) 동아리 연합회는 본회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 제 58 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매학기 납입하는 학생회비와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59 조(회계년도)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2. 전항의 회계연도는 2기로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시행 공고한다.
- 제 60 조(예산)
- 1. 예산은 대의원회에서 편성 배분된 액에 대한 각 기구별 예산액을 사업계획 및 항목별로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 2. 중앙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소집 10일전에 예산안을 공표한 후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대의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5일 이내에 심의, 확정해야 한다.
 - 3. 각 자치기구 의장은 총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4. 예산안이 총대의원회에서 확정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학생회 한 학기 예산배정액의 20%를 가예산으로 책정하여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 5. 예산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안에 가감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6. 총학생회비의 관리는 학교당국에 위임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 연합회 결재 하에 행하고 총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 7. 예산 및 행사계획은 학기별로 구분하되 학기에 배정된 예산안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8. 각 자치기구에서는 예산의 집행 후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하여야 한다.
 - 9. 각 자치기구의 선거 후 자치기구 건설준비위원회는 12월부터 이월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 61 조(결산) 각 기구는 매학기 결산안을 작성,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62 조(감사)

1. 총대의위원회는 결산 승인전에 본회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총대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급 자치기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2 조의 2(감사)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3 조(예산동결권) 총대의위원회에서는 각 자치기구의 부당한 운영이 있거나 제61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제 18조 제11항에 의거, 예산안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63 조의 2(동결된 예산 책정) 예산집행의 보류가 임기만료 시까지 유지될 경우 동결된 예산은 차기 학생회비 총액에 포함한다.

제 8 장 선 거

제 64 조(선거시기) 각 자치기구의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실시한다.

제 65 조(선거권) 선거권은 제4조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 66 조(피선거권) ① 학생자치기구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4학기 이상(68학점이상 이수예정자) 6학기 이내(102학점이상 이수예정자. 단,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 132학점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다만,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 이내(119학점이상 이수예정자. 단,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내, 149학점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단, 2011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은 4학기 이상(64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6학기 이내(96학점 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다만 1학기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 이내(112학점 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2. 성적이 전체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3. 형사처벌(금고이상)을 받거나, 유기정확 이상의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①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67 조(선거방법)

1.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총대의위원회 의장, 총대의위원회부의장, 단대학생회장, 단대부학생회장은 2인 1조로 선출한다.

2.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3. 선거는 직접선거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 단, 제 2차 선거 후 동점일 경우에는 성적,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68 조(임기) 각 자치기구의 임원임기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9 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재신임 투표에 의하여 탄핵 결정이 있을 시에는 그 잔여 임기가 4개월 이상일 때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4개월 미만일 때에는 다음 서열의 임원이 그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제 70 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71 조(선거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선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 72 조(발의) 회칙개정 발효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총대의위원회 재적 1/2이상 발의
2. 운영위원회 발의
3. 본회의 회원 1/10이상의 발의

제 73 조(의결, 공포)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총대의위원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총대의위원회의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확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대의위원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일) 본 개정회칙은 기존회칙의 창조법으로써 효력발생은 1987년 9월 1일부터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회계연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기년도부터 실시한다.

부 칙

제1조(확정) 본 개정회칙은 대의원회의 발의에 의해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하는 바이다.
제2조(공포)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 확정 후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조(효력발생일) 본 개정회칙은 총학생회장의 공포 후 차기년도부터 발효되며, 단, 선거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제4조(기타사항 및 통상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본회 목적에 의거하며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총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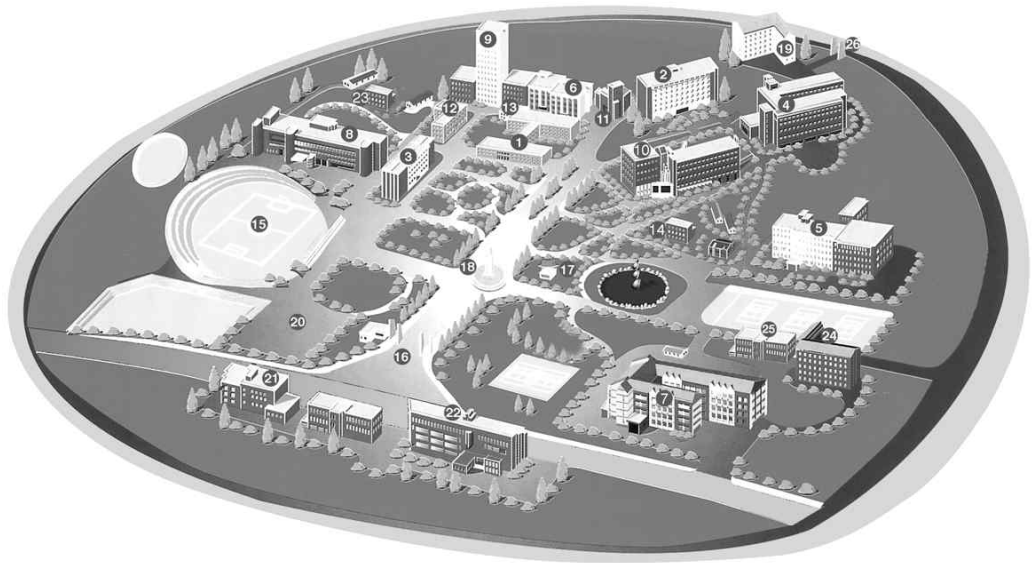
제 1 조(시행일자) 본 제66조(피선거권) 개정회칙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시행 되는 학생자치기구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캠퍼스 소개

□ 캠퍼스 배치도



- | | |
|-------------------|----------------------|
| 1. 인돈기념관(본관) | 14. 선교관(교목실) |
| 2. 탈메이지 기념관(어학센터) | 15. 종합운동장 |
| 3. 화이트기념관(사범대학) | 16. 정문 |
| 4. 문과대학 | 17. 진리의 북 |
| 5. 경상대학 | 18. 상징탑 |
| 6. 이과대학 | 19. 기숙사(진리관, 자유관) |
| 7. 사회과학대학, 미술대학 | 20. 교내주차장 |
| 8. 학생회관 | 21. 캠퍼스타운 |
| 9. 공과대학 | 22. 평생교육원 |
| 10. 법과대학, 박물관 | 23. 글로벌칼리지, 한국어학당 |
| 11. 성지관 | 24. 유림관(고시원) |
| 12. 미술교육관 | 25. 학술정보관 |
| 13. 학군단 | 26. 글로벌하우스, 소망관(기숙사) |

□ 지리적 배경 □

한국 교통의 요충지이며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맥을 이어온 대전광역시에 자리잡은 우리 한남대학교 오정동 캠퍼스는 대전역 북쪽 약 2.7km,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서쪽 약 2.6km 지점 서대전역 3.7km(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13만평의 교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초기인 1956년만 해도 현재의 본교 캠퍼스는 대전시 서북쪽 외곽인 大德郡 懷德面이어서 3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포근하고 아늑한 정취를 자아내는 대학 캠퍼스였다. 이후 대전시가 서울시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가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시세 확장과 더불어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어느덧 본교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유일한 교육기관이자 녹지공간으로 남아 있고 주변 야산들은 재개발로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본교를 중심으로 뒤편에 鷄族山(425m, 백제 雨述山城)과 신탄진, 좌측에 食藏山(598m), 우측에 儒城 온천과 鷄龍山(동학사), 앞쪽에 보문산(458m)과 사정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본교 우측에는 서울부산간고속철도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고 있고 뒤편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대덕R&D특구, 유성을 연결하는 8차선 한밭대로가 있다.

대전시의 大系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가장 큰 하천인 甲川이 대둔산(979m)에서 發源하여 남에서 북으로 흐르다가 흑석, 가수원을 거치면서 東北방향으로 流向을 바꿔 柳等川과 '93 EXPO행사장 앞 대화동에서 합해져서 新灘津을 관통하는 錦江本流와 合流하고 있다. 大田市街 중심을 東에서 西로 貫通하는 大田川은 錦山 止鳩山 山內에서 發源하여 市內에서 大洞川등 몇 개 支流가 합쳐 柳等川과 만난다. 柳等川은 珍山에서 發源하여 南에서 北으로 흘러 본교 서편 三川洞(둔산가람아파트 1단지 부근)에서 大田川에 의해 東北과 西南으로 구획되고 중구와 서구를 유등천이 가름하며 대전시와 유성을 甲川이 크게 양분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교 남쪽에 大田川이, 서편지근에서 柳等川과 大田川이 교류하고 북서편 후방에 甲川이 흐르고 있다.

□ 캠퍼스 개관 □

우리 대학교를 찾는 분들은 꼭 짜여 있으면서도 포근한 캠퍼스의 풍취에 누구나 놀란다. 대학 설립초기에 자리잡은 기념관이 옛모습으로(동기와) 복원된 인돈기념관과 '86년 완공된 聖志館을 중심으로 좌우로 적절한 건물 배치와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후사면의 울창한 청림 소나무숲, 좌측편에 자리잡은 국제경기 규모의 인조잔디로 조성된 종합운동장, 그리고 중앙로에 위치한 상징탑의 독수리 웅비상 등이 고저를 안배하여 캠퍼스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크게 보아 15개 교사동과 종합운동장, 글로벌하우스(외국인교수아파트) 남녀기숙사, 학군단, 성지관 등이 자리잡고 있다. 본교에 들어서면서 마주치는 교문은 좌우측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양음각으로 십자가상을 이미지화하여 본교의 설립이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진입로 좌우에는 은혜의 동산과 본교 교목(校木)인 은행나무들이 포진하고 있다. 중앙로의 위에 본교 상징동물인 황금독수리상이 대학의 이상을 품고 비상하듯 나래짓을 하고 있으며, 탑신 전면에 본교 교훈인 “眞理·自由·奉仕”와 십자가상이 양각되어 있고 후면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義를 구하라”는 성구가, 그리고 측면에는 “그의 뜻이 이 땅에도……”가 각인되어 있다.

상징탑을 기준으로 중앙로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측엔 박물관과 인문학관, 탈메이지홀, 좌측엔 화이트기념관, 학생회관이 들어서 있으며, 중앙로 인도변으로 37년된 메타세쿼이아(Dwon Redwood)가 울창하게 우거져 도심속의 녹지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면에는 인돈기념관이 현재는 행정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후면에는 성지관과 이과대학관이 차지하고 있다. 이과대 측면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대 건물이 자리잡아 캠퍼스 전체를 포용하고 있다.

한편 교문 앞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캠퍼스 타운 2개동이 대학구성원 복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4층 건물의 평생교육원이 자리잡고 있다.

□ 교사(校舍)와 복지시설 소개 □

■ 인돈 기념관(Linton Hall) : 본관 <1동>

우리 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현재는 행정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956년 6월 착공하여 1957년 9월 I 자형 본관 건물(2층)이 완성될 당시는 철근 콘크리트와 적색 연와 혼용 건축 구조물로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붕은 적색 기와로 입혀 동서양 건축양식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이었다. 이후 기와를 벗겨내고 그 위에 강의실과 연구실을 증축하여 총 1,663평 규모의 I자형 현재의 건물로 완성되었다. 본교 설립자인 인돈 박사를 기리기 위해 1960년 10월 25일 인돈기념관으로 명명되어 현재는 대학본부 행정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교 55주년을 즈음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목가구조 위에 동기와를 얹어 복원하였다.

- (1층) 교무연구처장실, 대학원, 경리팀, 구매관제팀, 학사관리팀, 입학관리팀, 교무연구팀, 대외협력팀, 국제교류팀, 우편실, 숙직실
- (2층) 이사장실, 총장실과 비서실, 부총장실, 회의실, 사무처장실,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기획조정처장실, 기획예산팀, 평가감사팀, 평가준비실, 교환실
- (3층) 입학홍보처장실, 홍보팀, 대학노동조합, 교수협의회, 산학연구지원팀

■ 탈메이지 기념관(Talmage Hall) <2동>

한때 제2교사로 지칭했듯 본교에서 두 번째로 완성했던 지상 4층 건물(1,319평)인데 1971년 12월 착공하여 1974년 5월에 준공하였다. 좌우대칭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중앙에는 천체 관측을 위한 돔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미술관을 위해 설계된 4층은 광선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테라스를 특이하게 설치하였다. 현재는 외국어교육원을 포함, 어학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다.

- (1층) 외국어교육원, 토익센터(국제시험장)
- (2층) 어학센터
- (3층) 아동복지학과 교수연구실, 실습실
- (4층) 어학센터

■ 화이트 기념관(White Hall) : 사범대학 <3동>

중앙로 서편에 자리한 화이트 기념관은 1978년 6월 착공하여 익년 12월에 완공한 연건평 1,553평 4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70년대 중반 본교 발전을 위해 White 여사가 기증한 기금을 근거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화이트 기념관으로 명명하였으며, 외벽도 흰색으로 처리하였다. 2006년 12월 479평이 증축되어 1,880여평이며, 현재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이 있다.

- (1층) 강의실, 사범대학생회
- (2층) 교육대학원장실, 사무실, 사범대학장실과 사무실, 중등교원연수원
- (3층) 사범대 교수연구실, 심포지엄홀
- (4층) 강의실, 열람실

■ 인문학관(문과대학) <4동>

중앙로를 따라오다 우측 경사진 도로를 올라가면 인문학관을 만나게 된다. I자형 적색 벽돌건물로 1980년 착공하여 익년 8월에 준공하였는데 건물 안쪽에 조성된 휴식공간은 보은정이라 불리운다. 1991년 12월 아래쪽 건물 위에 5층(143평)을 증축하여 총 연건평은 2,800평에 이른다. 인문학관은 주로 문과대학이 이용하고 있다.

- (1층) 계단강의실, 문과대학생회, 열람실
- (2층) 교수연구실, 컴퓨터실, 컴퓨터 영어학습실, 세미나실
- (3층) 문과대학장실, 사무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세미나실
- (4층) 교수연구실, 강의실, 학과사무실
- (5층) 교수연구실, 강의실

■ 경상학관(경상대학) <5동>

린튼기념공원 측면에 자리잡은 경상학관은 연건평 2,569평의 철근 콘크리트 5층 건물이다. 1981년 9월 착공

하여 익년 8월 준공하여 전자계산교육원 건물로 사용되다가 1991년 9월 대규모 내부 구조변경 및 보수공사를 마치고 경상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면에 린튼기념공원이 있고 후사면의 소나무숲 등이 함께 어우러져 캠퍼스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1층) 경상대학장실, 사무실, 강의실, 방촌홀
- (2층) 교수연구실, 컴퓨터실, 강의실
- (3층) 교수연구실
- (4.5층) 열람실, 실습실, 강의실

■ 이학관(이과대학) <6동>

행정관(본관) 뒤편, 중앙로를 쪽 들어가면 마주치는 건물이 이학관이다. 1983년 7월 착공하여 익년 8월에 완공한 이학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3,815평 규모이다. 울창한 청림 소나무숲 정중앙에 위치하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전면을 내려다 보면, 마치 캠퍼스 전체를 좌우로 거느리는 형국을 띠고 있다.

- (지하 1층) 광·전자물리학과 실험실, 매점
- (1층) 대학교회, 연구실, 광·전자물리학과교수연구실, 실험실, 강의실
- (2층) 이과대학장실, 사무실, 광·전자물리학과, 생활체육학과 강의실
- (3층) 특수대학원, 연구실 강의실
- (4층) 의류학과, 강의실, 연구실
- (5층) 수학과, 교수연구실, 강의실

■ 성지관(聖志館) <6동>

교문을 들어서서 시선을 들어보면 청림숲 언덕 위에 대형 십자가와 마주친다. 이 대형 십자가가 설치된 건물이 본교 성지관(연건평 1,163평)이다. 성지관은 이학관과 같이 착공하여 1986년 8월에 준공하였다. 당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좌석수(1,612석)와 최신식 무대장치, 극장식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대학 고유의 채플(예배)뿐만 아니라 대전충청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문화행사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사회과학관(사회과학대학) <7동>

정문 동편 도로변에 적색 기와로 단장한 5층 건물이 사회과학관이다. 1985년 5월 착공하여 1988년 4월 준공한 이 건물은 한때 우리 학교 재단 산하 학교였던 대전간호전문대학 건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연건평 3,081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주로 사회과학대학이 사용하며 미술대학(디자인·회화전공)이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 후면에 있는 83평 규모의 별관 가건물은 도자기와 금속공예 실기실로 사용되고 있고 35평형 규모의 디자인전시실도 준비되어 있다.

- (1층) 탁구부 체육관, 실습실
- (2층) 두양홀, 과사무실, 컴퓨터실, 강의실, 열람실
- (3층) 사회과학대학장실 사무실
- (4층) 디자인전공 사무실, 실습실, 연구실
- (5층) 회화전공 사무실, 실습실, 연구실

■ 학생회관 <8동>

화이트 기념관 뒤 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한 적색벽돌 건물이 학생회관이다. 1986년 11월에 착공하여 1989년 9월에 준공한 학생회관은 지하1층 지상 4층에 연건평 2,977평의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콘크리트 건물로 2006년 12월 2층에 철골구조로 203평이 증축되어 3,180평의 면적이다. 각종 학생복지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등 학생 자치기구와 학생복지처가 사용하고 있다.

- (지하) 학생식당, 실내경기장, 에어로빅실
- (1층)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의무실, 신문방송국, 청림교지, 체육부, 미용실, 기념품코너, 카페및매점, 예비군연대, 휘트니스센터
- (2층)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후생복지위원회, 단대학생회, 소극장 (400석 규모), 동아리방
- (3,4층) 동아리방

■ 공학관(공과대학) <9동>

인돈기념관 뒤 이학관 서편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면적 5,115평 규모의 건물이 공학관이다. 1991년 6월 26일 착공하여 1993년 6월 30일 완공하였다. 이 건물은 주위의 청림 소나무 숲 속에 12층 건물이 우뚝 솟아올라 캠퍼스 조경에 큰 몫을 하면서 대전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경관을 지니고 있다. 특히 12층에는 국제규모의 제반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국제회의실이 있다.

(지하1층) 민군겸용보안공학센터, 학생회, 휴게실, 전기기기실, 공동제도실

(1층) 학과사무실, 강의실, 실험실, 세미나실

(2층) 학과사무실, 강의실

(3층) PC실, 공과대학장실과 사무실, 실험실, 강의실

(4-6층) 교수연구실, 실험실

(7-11층) 교수연구실, 실험실

(12층) 국제회의실

■ 학술정보관 <10동>

본 학술정보관은 도서관, 전산소, 시청각지원실을 통합하여 단일 조직으로 체계를 정비한 학술정보처의 통합정보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2,160평 규모의 건물로서 1999년 12월에 개관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총 51만권의 국내외 단행본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2,100여종의 학술지를 구독중에 있다. 그리고 약 2,900여석의 자유열람실을 별도의 건물에 운영하고 있다.

(지하1층) 보존서고 상층

(지하2층) 보존서고 하층

(1층) 멀티미디어열람영역, 인터넷열람영역

(2층) 연속간행물영역, 인문과학자료영역

(3층) 사회과학자료영역, 과학/기술/예술자료영역

(4층) 기독교자료영역, 지정도서, 고서실

■ 법학관, 박물관 <11동>

중앙로 상징탑을 지나면서 우편으로 건물 중앙 출입구가 4층까지 커튼월(유리)로 시공된 건물이 법학관 및 박물관이다. 중앙로쪽 5층 건물 중 아래 2층이 제일 먼저

축조되었는데 1977년 6월 17일 착공하여 익년 4월 4일 2층까지 완공하였다. 이후 뒤편 건물과 앞쪽 3개층을 증축하여 3,889평에 이르고 있는데 1999년 11월 학술정보관(도서관 포함)이 완공되면서 법과대학, 멀티미디어대학, 박물관(자연사 포함), 자유열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 주위에는 고목나무와 적절한 조경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박물관 석물인 지석, 돌사자 등이 배치되어 있다. 앞 광장은 80년 중반부터 자유의 광장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건물은 한때 기획실, 학생처, 학생회 및 동아리방으로 사용하다가 학생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중앙도서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다.

(1층) 제 1자유열람실, 공동강의실, 신협, 명예교수실, 취업지원팀, 휴게실, 우체국, 구내서점

(2층) 제 2·3자유열람실, 법과대학 모의법정·공동강의실, PC실, 학생회실

(3층) 제 4·5자유열람실, 법과대학 교수연구실, 법과대학사무실, 학장실, 학과사무실, 대학원 강의실, 세미나실, 과학기술법연구소, 법학자료실, 법과대 열람실, 휴게실

(4층) 중앙박물관 관장실, 사무실, 전시실, 멀티미디어 학부사무실, 교수연구실, 실습실, 스튜디오, 휴게실

(5층) 자연사박물관 사무실, 전시실

(지하) 보일러실, 매점

■ 미술교육관 <12동>

1964년 12월 완공하여 연건평 433평의 아담한 현대식 3층 건물이다. 인돈 기념관과 함께 대학설립 초기에 건축된 건물로서 남장로교 선교기금으로 건립된 건물이다. 성지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채플과 함께 식당으로 이용되다가 이후 중간 공간에 한 층을 더 증축하였다. 2006년 12월 118평을 증축하여 551평의 공간으로 미술교육과에서 전관을 사용하고 있다.

■ 학군단 <13동>

1975년 8월 완공한 학군단 건물은 인돈기념관 뒤편에 위치하며 181평 규모의 2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설립 초

기에는 학생처와 미술과 조소실로도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학군단 전용 건물로 사용되는데 1층에는 행정실, 교관실, 피복실, 자치실, 2층에는 학군단장실, 교수부장실, 교관실, 등이 있다.

■ 선교관(교목실) <14동>

1967년 7월 준공된 스라브연와 3층(151평) 건물로서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학교설립 이념에 따라 전교직원은 물론 학생 복음화를 위한 신앙활동 지도를 위해 교목실과 선교훈련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 종합운동장 <15동>

주경기장 및 다목적 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으로 이루어진 종합운동장 시설은 1986년 4월 1차 공사로 400m 국제규격의 트랙 및 필드의 기반 시설공사와 주차장으로 착공하여 1987년 2월에 완공하였으며, 1986년 11월 2차 공사로 주경기장 및 다목적 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스탠드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1987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본부석과 진입로 등 모든 공사가 1988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주경기장은 연건평 1,271평에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스탠드 내부에는 실내 경기장 및 샤워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고, 다목적 경기장은 스탠드 면적 321평에 1,300여명을 수용, 보조경기장은 스탠드 면적 267평에 약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우레탄포장 및 인조잔디 공사를 완료하여 FIFA 공인 승인 축구장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본부석을 시설하였다.

■ 유림관(국가시험지원센터) <19동>

유림관은 (주)계룡건설 이인구(李隣球) 회장이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기증한 것으로서 그의 아호인 유림(裕林)을 따서 유림관이라 명명하였다. 1987년 6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완공한 유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건평 200평의 난방시설을 갖춘 콘크리트 건물로, 29개의 방(2인용)과 샤워실 1개소, 각 층에 화장실 등을 갖춘 아담한 건물로서 현재는 국가시험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 국제관 II <20동>

1975년 10월에 착공하여 1976년 6월 완공되었으며 건평 143평의 양식 건물로 한때 총장 공관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글로벌칼리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 글로벌칼리지 <22동>

1999년 2층으로 신축하고 2001년 신축한 연면적 1,204㎡ 4층 건물로 산학협동관으로 사용하다가 대덕밸리캠퍼스로 산학협력단이 이전 후에는 글로벌칼리지와 한국어학당이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어전용강의동이며 한국어학당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200여명의 외국인이 머무르고 있다.

■ 교직원 식당 <24동>

1978년 미술교육관 옆에 1,2층으로 증축하여 1층에는 조리실, 2층에는 홀을 갖춘 153평의 면적으로 교직원들의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인문학술원 <31-1~3동>

1956년 신축된 3개동의 한식과 양식으로 축융된 건물은 그 양식과 보존이 잘되어 있으며, 2001.6월 대전시 지정 제 44호로 3체가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 남자기숙사<33동>, 여자기숙사<32동>

인문학관 앞 청림 소나무숲과 동대전고등학교·용전중학교 분기점에 1991년 12월 1일 총면적 1,980평(남녀 550명 수용)규모의 남녀기숙사를 착공하여 94년 2월 25일 준공하였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동 여자기숙사는 자유의 집 5층 건물로서 총52개 방에 사생실(4인 1실) 44개 방 176명을 수용하고 있다. 2동 남자기숙사는 진리의 집 7층 건물로서 총 101개방에 사생실(4인 1실) 95개 방 38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총 남녀 556명이 안락한 기숙사에

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다.

■ 소망관<남여기숙사/37동> 및 글로벌하우스<36동>

경상대학교 인돈학술원 부근의 선교사촌에 남여기숙사 1동(지하 1층, 지상 10층)에 최신식 냉난방시설등과 각 실의 샤워시설등이 완비된 540여명의 학생기숙사와 34실의 외국인 초빙교수들의 아파트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시지정 근대문화제 44호로 지정된 인돈학술원과 환경친화적인 환경속에서 비전을 세워가고 있다. (건축연면적 10,691㎡ / 3,234평 신축완공: 2008.1.15)

■ 평생교육원

정문 앞 캠퍼스 타운 동편에 위치한 적색벽돌 4층 건물이 평생교육원이다. 1989년 10월 16일 착공하여 익년 12월 31일 완공한 이 건물은 연건평 1,60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다. 급증하는 정보처리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교육원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시공,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지정한 지방 최초의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2층 외부 발코니에는 푸른색의 인공잔디가 조성되어 원생들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평생교육원에서 IT센터를 흡수통합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1층) 법인처장실과 사무실, 계단강의실, 노인정보화 교육센터
- (2층) 연구실, 실습실, 강의실, 평생교육원
- (3-5층) 실습실, 열람실, 강의실, 국제IT교육실, 강의실, 실습실

■ 캠퍼스 타운(Campus Town)

정문 앞 넓은 공간을 활용, 학교 및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캠퍼스 타운 2개동이 조성되어 있다.

1989년 5월 착공하여 익년 3월에 준공한 1,400여평의 3층 콘크리트 적색 건물이다. 문화공간으로 영화감상실과 금융기관 농협등을 비롯하여 화장품, 선물코너, 25시편의 점 및 식당 등이 있다.

A동 (지하 1층) 시식코너

- (1층) 사진관, 안경점, 24시편의점, 문구센터 등
- (2층) 중식당, 복사, 제과점, 레스토랑, 한우동 등
- (3층) 당구장

B동 (지하 1층) 당구장

- (1층) 농협, 화장품코너, 선물코너, 편의점 등
- (2층) 농협, 노래연습장, 영화감상실, 광고사 등
- (3층) 당구장

2012 한남대학교 요람

인 쇄 2012년 3월

발 행 2012년 3월

발행인 김 형 태

편집인 김 홍 기

발행처 한남대학교 기획조정처 기획예산팀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 (042)629-7238 FAX(042)629-8048

<http://www.hnu.kr>

(비매품)

